#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82

발의연월일: 2021. 4. 2.

발 의 자:김병주·김병기·기동민

김영주 • 유정주 • 정필모

김진표 • 홍영표 • 양정숙

양이원영 · 김민기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 특히, 동원 사단의 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 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비군법」(의안번호 제928 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 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여성을"을 "여성 및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을"로 한다.

제4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제7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은 선발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연장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	제2조(정의 등) ①
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	2
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	
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	
무한 <u>여성을</u> 말한다) 중 예	여성 및 「예비군법」
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된 사
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u> 라을</u>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	
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제49조(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등)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병	<u> 등</u> ) ①
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	
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u>다</u>

#### <단서 신설>

② (생략)

(생 략)

<신 설>

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으로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연간 180일 이내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②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 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 된 사람은 선발된 날로부터 5 년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를 연장할 수 있다.